

배포일시	26년 8월 27일	보도일시	26년 8월 27일(즉시)
사진	유 ☒ 무 ☐	쪽수	2쪽(본문2)

DAXA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 개최

- 개정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보고 의무화
- DAXA가 마련한 전용 전산망 통해 사업자 개별 구축 부담 해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금일(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이하 '개정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의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 체계가 법으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에 따른 등록 요건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필수적이다. 오는 12월 3일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의 수행이 제한되므로 신속한 제도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DAXA는 업권 전문성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원활한 보고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법령 수범 준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는 물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책임자	본부장	홍균	02-6959-8084
		담당자	부장	장재현	02-6959-8087
			차장	이형주	
		홍보실	홍보팀장	유민상	010-2305-8084
			대리	박영선	010-5420-8084

[붙임]

